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 8.**

**중 소 기 업 청**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06호, 2013.8.6 공포, 2014.1.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연(연) 중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에 포함 (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기청장이 요청하는 지원비율을 기술 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시행령 안 제11조제3항)
- 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출연금 환수범위 중 “부도·폐

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환수근거를 마련함  
(시행령 안 별표2)

###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http://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4403, Fax : 042-472-328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호 중 시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에너지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제11조제3항 중 “통보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다음 해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해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요청받은 지원비율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원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전				개정후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다. 부도나 폐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법 제31조제1항 제1호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 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다. 부도나 폐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5년간 유예 후 면제	법 제31조제1항 제1호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계을리한 경우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법 제31조제1항 제7호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계을리한 경우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5년간 유예 후 면제	법 제31조제1항 제7호
9.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법 제31조제1항 제9호 제20조제1항제2호	9.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5년간 유예 후 면제	법 제31조제1항 제9호 제20조제1항제2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사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생략)</p> <p>②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한국 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 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및 한국 가스공사 &lt;시행기관 추가&gt;</p> <p>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비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다음 해 기술 혁신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p>	<p>제11조(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p> <p>③ ----- ----- ----- ----- ----- ----- ----- ----- ----- ----- 요청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해 기술혁신지원계</p>

야 한다. <단서조항 추가>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지원비율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원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끝.